이주, 노동, 송금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이주의 규모

증기선은 상품뿐 아니라 사람도 실어 날랐습니다. 1870년대부터 아모이(샤먼), 산터우, 광저우, 하이난에서 온 배들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인 이주민을 싱가포르로 데려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와 네덜란드령 동인도 대부분으로 들어가는 주요 입국항이었습니다. 조이스 이(Joyce Ee)의 중국인 이주 연구는 1838~1839년 2,069명, 1849~1850년 1만 928명의 이주민을 집계했습니다. 1890년에는 연간 수치가 9만 5,400명에 이르렀고, 1895년에는 19만 901명으로 늘었습니다.[1] 1912년에는 약 25만 명의 중국인이 싱가포르에 상륙했습니다.[2]

이 이주민 대부분은 싱가포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락과 슬랑오르의 주석 광산, 조호르와 수마트라의 농장, 역내 도시들로 가는 길에 이 항구를 거쳐 갔고, 많은 이가 몇 년 뒤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섬의 인구 구성을 바꿀 만큼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1871년 인구조사는 싱가포르 주민을 9만 7,111명으로 집계했으며, 그중 5만 4,572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1901년 인구는 중국인 16만 4,041명을 포함해 22만 8,555명으로 늘었고, 1931년에는 55만 7,745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41만 8,640명, 말레이인이 6만 5,014명, 인도인이 5만 811명이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주민 사회는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1901년 인구조사는 중국인 남성 13만 367명에 비해 중국인 여성은 3만 3,674명에 불과하다고 집계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에는 중국인 인구 중 싱가포르 출생자가 약 10%에 불과했습니다.[3] 정착한 현지 출생 공동체가 성장한 것은 양차 대전 사이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중국인 인구 중 해협 출생 중국인의 비중은 1921년 25%에서 1931년 36%로 높아졌습니다.[4]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민 제한과 함께, 훗날 독립국가의 시민이 될 정착 사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신용 승선권 제도와 쿨리 무역

스스로 뱃삯을 낼 수 있는 이주민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외상으로 여행했습니다. 신용 승선권(credit-ticket) 제도에서는 중개인이나 선장이 뱃삯을 선불하고, 도착한 이주민을 데려가는 고용주로부터 이를 회수했습니다. 그 후 이주민은 노동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일종의 금융이었습니다. 노동자의 미래 임금을 거래 가능한 채권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심각한 남용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중개인, 숙박업소 주인, 비밀결사가 도착한 이주민을 장악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해 그들을 속였으며, 그들의 노동계약을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에게 팔았습니다. 신객*(sinkeh)*으로 불린 많은 신참 이주민은 언어도, 법도, 자신의 권리도 모른 채 도착했습니다.

식민지 정부는 오랫동안 이 거래를 민간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에 이르러 남용은 공공연한 추문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비밀결사는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1877년 해협식민지 중국인 주민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화민호위사(Chinese Protectorate)를 설치했고, 이후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에 각각 호위관(Protector)을 두었습니다. 초대 책임자는 윌리엄 피커링(William Pickering)이었습니다. 그는 북경어와 복건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싱가포르 최초의 유럽인 관리로, 1877년 5월 3일 화민호위관(Protector of Chinese)에 임명되었습니다.[5]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화민호위사는 쿨리 중개인에게 등록을 의무화했고, 노동시장을 중개인과 비밀결사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관리들은 도착한 이주민을 면담하고, 가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점검했으며, 비밀결사가 운영하는 매춘업소에서 16세 미만 소녀들을 구출했습니다.[6] 시간이 지나면서 화민호위사는 중국인 공동체 내부의 분쟁 해결에서 비밀결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국가는 수십 년 동안 공적 감독 없이 운영되던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금융 중심지가 모든 종류의 중개기관에 적용하는 영업행위 규제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인 노동력과 타밀 이민기금

두 번째 이주 흐름은 남인도에서 왔습니다. 1860년까지 인도인은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큰 공동체가 되었지만, 이후의 인도인 노동력은 대부분 반도의 농장이 흡수했습니다.[7] 1907년 이전에는 농장들이 각자 비용을 들여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네가파탐(Negapatam)의 에이전시 하우스를 통하거나, 흔히 자기 고향 마을로 돌려보낸 십장인 면허 모집인, 곧 캉가니*(kanganies)*를 통해서였습니다. 모집된 노동자는 비쌌고, 뱃삯을 부담한 고용주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쟁자에게 노동자를 빼앗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크림핑(crimping)이라고 불렀습니다.

1907년 해협식민지는 타밀 이민기금 조례(Tamil Immigration Fund Ordinance)를 제정하여, 남인도에서 노동력을 모집하는 데 드는 자금을 대기 위한 기금과 이민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인도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은 기금에 분담금을 냈고, 기금은 노동자의 뱃삯을 지급했습니다. 모집 비용을 모든 고용주에게 분산함으로써 기금은 크림핑의 유인을 없앴고, 식민지 정부에 인도인 노동력의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주었습니다.[8] 이 기금은 훗날 인도 이민기금(Indian Immigration Fund)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캉가니 제도는 인도 정부가 비숙련 노동자의 해외 이주를 금지한 193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9]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기금은 고용주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법률로 만들어지고 공적 감독 아래 운영된 공동 자금조달 장치였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기금이 뱃삯을 대 준 노동자보다 고용주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 기금은 훗날 싱가포르가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법정 기금을 예고했습니다. 제D편 제I장에서 살펴보는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부터 직업훈련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쓰이는 부담금에 이르기까지가 그 예입니다.

송금: 교비*(qiaopi)* 무역

이주민들은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은 역내에서 가장 큰 금융 흐름 중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중국인의 송금은 교비*(qiaopi)*의 형태로 오갔습니다. 교비는 해외 화교가 고향 가족에게 하나의 봉투에 함께 넣어 보낸 편지와 돈을 말합니다. 수객*(shuike)*으로 불린 배달꾼들은 12월 북동 계절풍을 타고 싱가포르로 왔다가 6월 남서 계절풍을 타고 편지와 현금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훗날에는 송금업체인 교비국*(qiaopiju)*이 이 사업을 넘겨받아 은행 제도와 우편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초기 배달 수수료는 송금액의 10~20%에 달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 3%로 떨어졌습니다.[10]

이 거래는 방언 집단과 씨족 네트워크 내부의 신뢰에 기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송금업체는 푸젠성이나 광둥성의 특정 지역 출신 이주민을 상대했고, 그들 고향의 거래처와 협력했습니다. 거래처는 돈을 전달하고 답장을 받아 왔습니다. 대부분의 송금은 소액이었습니다. 80% 이상이 300위안 미만이었고, 1937년까지 은행과 우편 서비스가 처리한 비중은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영국 당국은 싱가포르의 송금업체들이 편지에 소인을 받아 중국인 우편 분국을 통해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 거래를 규제했습니다. 이 거래의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1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송금업체는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만든 최초의 금융 기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체하고, 통화를 환전하며, 거래처 네트워크를 통해 잔액을 결제했습니다. 이 편 제III장에서 살펴보는 20세기 초에 설립된 중국계 은행 중 여러 곳이 송금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비공식 가치 이전이라는 같은 구조는 오늘날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H편 제III장은 현재 송금 및 지급 사업을 규율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살펴봅니다.

경제 기반시설로서의 이주

싱가포르를 거쳐 간 노동력은 이 편 제IV장에서 살펴보는 말라야의 주석·고무 경제를 일구었습니다. 항구 자체를 건설한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들은 배에 석탄을 싣고, 화물을 적재하고, 도크와 매립지를 건설하고, 창고와 가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없었다면 증기선과 전신의 기술은 별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금융 중심지의 관점에서 이주는 세 가지 지속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첫째, 아시아 전역에 가족 및 사업 관계를 가진 인구를 만들어 냈고, 이는 제I편에서 살펴보는 역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송금에서 저축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냈습니다. 셋째, 사람의 이동을 규제하는 일을 식민지 국가의 핵심 기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독립 후 싱가포르는 제J편 제IV장에서 살펴보는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력 관리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1. Joyce Ee, “Chinese Migration to Singapore, 1896–1941”,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2, no. 1, 1961년 3월, 33–51면(발췌, cambridge.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38–1839년 이주민 2,069명; 1849–1850년 10,928명; “By 1890 the annual figure had risen to 95,400”; 1895년 190,901명.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Singapore*, “Colonial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ome 250,000 Chinese alone disembarked in Singapore in 1912”. ↩

3. Wikipedia, “Demographics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역대 인구조사 표: 1871년 총 97,111명(중국인 54,572명, 말레이인 26,148명, 인도인 11,610명); 1901년 총 228,555명(중국인 164,041명, 말레이인 36,080명, 인도인 17,824명); 1931년 총 557,745명(중국인 418,640명, 말레이인 65,014명, 인도인 50,811명); Wikipedia, “Immigration to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01년 인구조사는 중국인 남성 130,367명과 중국인 여성 33,674명을 집계; “by the late 1890s only around 10% of the Chinese population were native-born in Singapore”. ↩

4.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Singapore*, “Between the World Wars”(countrystudies.us/singapore/7.ht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해협 출생자들은 “increased their share of Singapore’s Chinese population from 25 percent in 1921 to 36 percent in 1931”. ↩

5. Wikipedia, “William A. Pickeri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Protector of Chinese”라는 직함으로 “on 3 May 1877” 임명; “the first European official in Singapore who could speak fluent Mandarin and Hokkien”. ↩

6. Wikipedia, “Chinese Protectorat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i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877 to handle all matters related to the Straits Settlements’ Chinese residents”,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에 각각 호위관이 이끄는 호위사를 둠; Wikipedia, “Chinese Protectorat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쿨리 중개인은 화민호위사에 등록해야 했고 노동시장은 중개인과 비밀결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남; 가사 노동 점검; 비밀결사가 운영하는 매춘업소에서 16세 미만 소녀 구출; 공사(kongsi)를 포함한 중국인 결사 등록. ↩

7. Wikipedia, “Histor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By 1860, the Indians had become the second-largest ethnic group”.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8. Pushpavalli A. Rengasamey and Sivachandralingam Sundara Raja, “The Role of and Development of the Tamil Immigration Fund in Malaya, 1907–1938”, *SARJANA*, vol. 27, no. 2, 2012년, 38–49면(초록,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기금은 남인도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해 1907년 타밀 이민기금 조례에 따라 설립됨; 1907년 이전에는 농장들이 네가파탐의 에이전시 하우스나 면허 캉가니를 통해 모집; 크림핑; 기금과 이민위원회는 영국이 인도인 노동자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기여. ↩

9. 2차 문헌: 기금은 인도 이민기금(Indian Immigration Fund, 1912년), 남인도 노동기금(South Indian Labour Fund, 1958년)으로 개칭됨; 캉가니 제도는 인도 정부가 비숙련 노동자의 해외 이주를 금지한 뒤 1938년 폐지됨. ↩

10. Wikipedia, “Qiaopi”(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교비는 “consisted of a letter and money sent by overseas Chinese to their families back in China”, Benton and Liu, 2018 인용; Wikipedia, “Qiaopi”(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수객은 12월 북동 계절풍을 타고 싱가포르로 와서 6월 남서 계절풍을 타고 돌아감; 초기 배달 수수료 10–20%가 약 3%로 하락; 송금의 80% 이상이 300위안 미만; 1937년까지 은행과 우편 서비스가 처리한 교비는 20% 미만(Benton and Liu, 2018). ↩

11. Wikipedia, “Qiaopi”(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의 교비 무역은 중국인 우편 분국을 설치한 영국 당국이 규제함; 싱가포르의 모든 교비국은 교비를 “stamped and sent through the Chinese sub-post office”하도록 의무화됨(Kua, 2019); Wikipedia, “Qiaopi”(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Qiaopi and Yinxin”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기록유산, 2013년 국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